

–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–

專門委員 檢討報告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6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6월 5일

제안 이유

○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 내용

○ 자원봉사활동법 위 확대(안 제2조)

○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: 20인 이내(안 제3조)

○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(안 제6조)

-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. 다만, 필요 시 도지사가 직접 운영토록 함.
-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

○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(안 제7조)

○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(안 제9조)

○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(안 제15조)

□ 검토 의견

-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17개의 조문과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현행과 달리지는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
- 먼저, 안 제2조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지역사회개발·발전에 관한 활동,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등 8개분야가 추가 확대되었으며, 자원봉사활동의 권장과 지원을 위해 “자원봉사발전위원회”를 설치하도록 안 제3조에서 신설하고 있음.
- 또한 안 제5조 자원봉사센터 사업에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,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등이 추가되었으며, 안 제6조 센터의 운영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아울러, 안 제13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현행 15명에서 20명로 확대하고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에서 민간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방 확대하였으며, 안 제12조내지 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우수봉사자 포상, 경력 인정, 자원봉사자 사고대비 보험가입,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 물품 또는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.
- 검토결과, 최근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추세에서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재정비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본 조

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여겨짐.

- 다만,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 현황과 주요활동분야, 그리고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방안 및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시책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함.
- 덧붙여 안 제3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위원장은 도지사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제시가 필요하며,
- 안 제7조 센터장 선임과 관련하여 선임자인 운영주체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뜻하며 어떤 방법으로 선임할 것인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.

붙 임 :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